

창원지방법원 2022. 2. 8 선고 2021가단49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3. 2. 2 선고 2022나53089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2. 2. 8 선고 2021가단490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1. 12. 21.

판결선고 2022. 2. 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540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. 3. 19. 접수 제18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. 9. 27. 접수 제66988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김해시 C 하천 476㎡는, D가 1980. 11. 12. 구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실효된 것, 이하 ‘특별조치법’이라 한다)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, E가 1997. 9. 2. ‘1997. 8. 29. 매매’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, 1997. 9. 20. 위 토지의 지목이 하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. 그 후 피고가 2018. 3. 19. 위 C 토지에 관하여 ‘2018. 1. 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 한편, 피고는 2018. 9. 27. 김해시 F 대 64㎡에 관하여 ‘2018. 9. 6. 매매’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, 위 F 토지는 2018. 11. 22. 위 C 토지에 합병되었다(이하 김해시 C 토지를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.

나. 한편,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G이 1911. 9. 30.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3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이신 망 H의 소유인데, D가 위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망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, 피고는 망 E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 이와 같이 D, E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,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,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8388 판결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졌으므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D 명의의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따라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은정